

- 비산강변축구장 관리·운영 사무 -

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5757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0. . .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‘20년 10월 2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비산강변축구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비산강변축구장 관리·운영 사무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11조 ~ 제12조
(민간위탁의 기준 및 대상기관의 선정기준)
-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 ~ 제6조
(위탁사무의 기준, 위탁사무의 대상, 위탁사무 선정기준 등)
- 「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」 제23조(체육시설의 위탁관리)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민간경영기법 도입과 전문성 확보로 운영의 효율성 증대
- 민간위탁으로 인한 시비부담 완화
- 전략적인 홍보·마케팅으로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및 스포츠 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
-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운영으로 운동선수 기량 향상

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: 비산강변축구장 시설관리 및 운영
 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986
- 준공연도 : 2016년
- 규 모
 - 부지면적 8,700㎡
- 지원시설
 - 축구장 1면
- 운영현황

(단위 : 천원, 명, 일)

| 연 도 | 수탁기관 | 이용자 수 | 이용일수 | 수입 ① | 지 출 ② | 경영이익 ③=①-② |
|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2018 | 대구광역시 체육회 | 4,189 | 93 | 대구광역시 체육회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. | | |
| 2019 | | 5,751 | 84 | | | |
| ※ 수입 : 무료 이용 ※ 지출 : 유지관리비(청소, 소규모 보수 등)는 수탁자 부담. 지출된 비용 없음. | | | | |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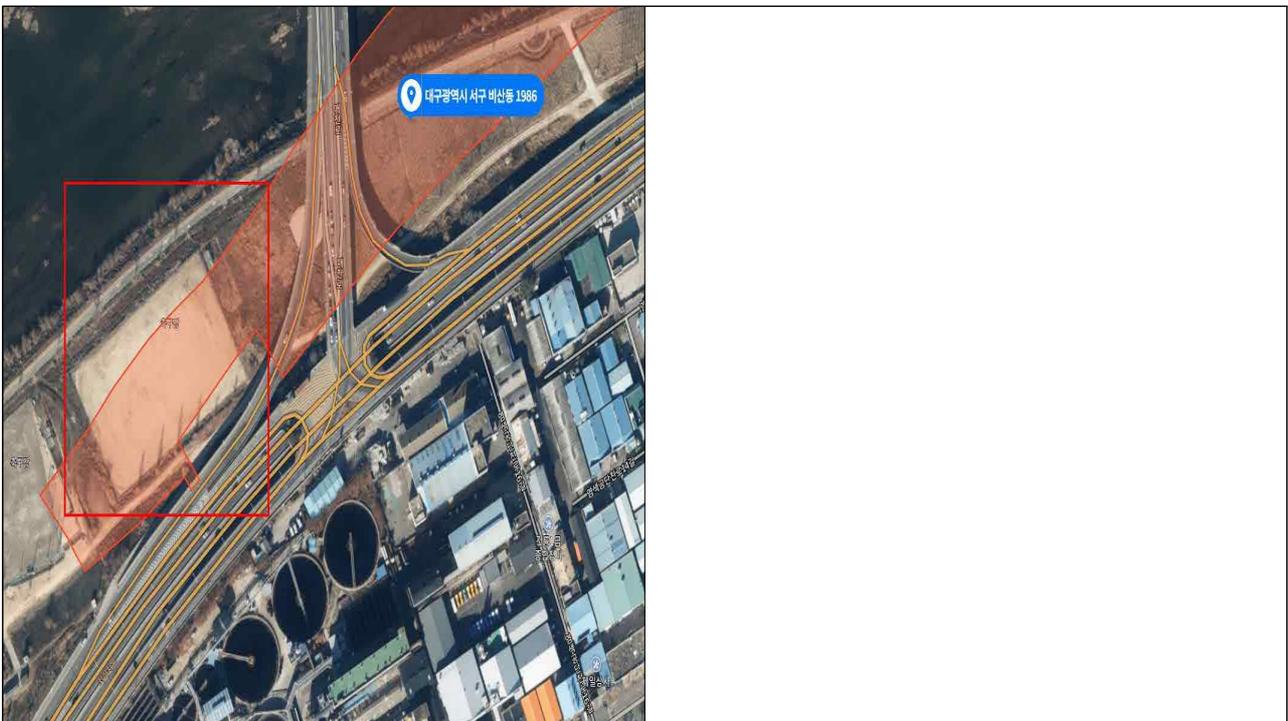
○ 2019년 성과평가내역(평가기관 : 대구경북연구원)

- 종합평점 78.72점(다 등급)

※ 등급부여기준

| 등 급 | 가 | 나 | 다 | 라 | 마 |
|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평 점 | 100~90 | 89~80 | 79~70 | 69~60 | 59 이하 |

○ 위치도(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986)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2020. 10. 21. ~ 2023. 10. 20.(3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수익창출형(독립채산형) - 예산 미지원

※ 예산 지원 없이 수탁기관의 책임 하에 관리·운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(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)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 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(이하 "민간수탁기관"이라 한다)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,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, 처리기준의 불공정,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4조(위탁사무 기준)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5조(위탁사무 대상)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아동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2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3. 환경 기초시설 운영, 폐수·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
4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5. 체육·공원시설 등 시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6. 산업지원·직업훈련·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7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6조(위탁사무 선정기준) 시장은 제5조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

제23조(체육시설의 위탁관리)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체육발전·선수육성·체육시설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수탁기관은 수탁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·이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신규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한 강습비 등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고, 체육발전과 선수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④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를 적용한다.

제23조의2(권한의 위임) 시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권한을 별표 1에서 정한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.

나.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

○ 민간위탁추진계획